

## 고 발 장

고 발 인     조국혁신당

고발대리인 :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의원 김선민 등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대표고발인 국회의원 김선민, 차규근)

- 피고발인
1. 윤 석 열 (대통령, 직무 정지 중)
  2. 박 종 준 (대통령경호처장)
  3. 김 성 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4. 이 광 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5. 이 진 하 (대통령경호처 경비본부장, TF 팀장)

##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 형  
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사안이 지극히 엄중한 사정 등을 반드시 감안하여 철저히 수사하시어,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 죄 혐 의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현재 직무정지 중이나 경호대상자이고, 피고발인 박종준은 대통령경호처장이며, 피고발인 김성훈은 대통령경호실 차장이고(경호처 5기), 피고발인 이광우는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경호처 5기)이며, 피고발인 이진하는 대통령경호실 경비본부장이자 본건 관련 경호처 내 TF 책임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소속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팀, 공수처와 윤석열 등 내란사건에 대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팀 등은 2025. 1. 5. 08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른바 대통령 관저에 입장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윤석열 검거를 위한 관저 등 수색영장의 집행을 개시하였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경호를 빙자해 공수처 수사팀 등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순차 지시·공모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지휘권 내에 있는 무기를 휴대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 무기를 휴대한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관저 안팎에서 공수처 수사팀 등의 영장 집행을 위력을 동원해 장시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경호권을 남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인 공수처 수사팀 등 본건 영장 집행을 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생명불상자들에게 불상 상해를 가하였다.

## 고 발 이 유

### 1. 사건 경과

(1) 2024.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은 이른바 '12. 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검거대상자 수색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 2025. 1. 3. 08:00경 공수처는 이른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3)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대통령 경호를 빙자하여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상기 범죄혐의 기재 취재와 같이 경호권, 직권을 남용하여 휘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 및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무장 상태로 다수 동원하여 그 집행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 또한 현저합니다.

## 2.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1)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것은 경호대상자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무관하고, 이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집행 저지는 경호 목적 행위가 아닌 경호권 남용입니다.

(3) 대통령경호법 제18조 제1항은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 법 제19조 제2항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법에 정해진 엄격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기로 사람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5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정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나아가 대통령경호법 제21조는 동 법 제18조, 제19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관련

(1)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자는 가중처벌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합니다.

**제144조(특수공무원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호를 빙자하여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됨은 명백하고, 그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으므로 상해가 발생했음도 자명합니다.

(3)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이례적인 상황인바,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부안군의회 회의 방해’ 사건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996. 11.경 전북 부안군청 공무원 150여명은 당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의 지시로 부안군의회 회의 ‘군수 불신임 결의안’ 안전 사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는 등 방법으로 부안군의회 회의를 30분 가량 방해했는바, 이로 인하여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4. 피고발인 윤석열의 관여 정황

(1) 피고발인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여서 경호대상자일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형식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최상목은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다른 피고발인들이 윤석열의

복귀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체포영장 집행 등은 경호 대상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여서 윤석열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더욱이 윤석열은 2025. 1. 1.경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는 내용의 글을 전달하여,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선동하기도 하였습니다.

(3) 대통령경호처는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TF를 구성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는바, 이진하는 현 보직 임명 직전까지 윤석열의 수행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소위 ‘입틀막’ 사건으로 회자되었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강경파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자신이 경호처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식의 언행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과 영장 집행 저지를 숙의해 왔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 5. 발부된 수색영장에 부기된 기재 관련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윤석열에 대한 이른바 검거용 체포영장 외에

관저 내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동 영장에는 야간 집행을 허용하는 문구 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110조). 윤석열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는 2022. 8. 31. 0시를 기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도 하므로 한남동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한편, 공무상비밀에 관한 동 법 제111조가 압수 거부 가능성만 규정한 것과 달리, 제110조는 수색 거부 가능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이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든 군사상 비밀 보호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윤석열 체포가 군사상 비밀 보호와 무관하다는 건 명백하니 그것만으로도 제110조의 거부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항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통상 압수·수색은 증거물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체포·구속할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영장입니다. 제138조(준용규정)는 긴급한 경우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에 따라 수색영장 없이 구속영장만 발부받아 피고인을 수색할 때 준용될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을 열거합니다. 물건의 발견을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의 수색에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는 것입니다(『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의 제137조 관련 해설 참조).

(5) 그런데 동 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수색영장 없는 구속영장만에 기한 피의자 수색에 제11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색의 정당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준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수색에 관한 위 조항들은 기소 전의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동 법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들 중 수사과정에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될 조항을 열거하면서 물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수색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 수색도 피고인 수색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따라서 본건 체포영장에 명시된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타당합니다. 이 문구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제110조, 제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이미 책임자의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해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 충족에 꼭 필요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내 체포영장 발부 불가 취지로 극렬히 다투었기 때문에 책임자의 불승낙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컸으므로, 통상 체포영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임을 밝혀 둔 것은 영장담당 판사의 30여 시간 동안의 위와 같은 치밀한 법리 논증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 따라서 이는 반드시 기재해야만 했던 영장 발부의 이유일 뿐이지,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슨 판사의 권한 남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 청구 이외에는 법이 허용하는 불복방법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영장발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지극히 의문이고, 윤석열 측의 법 경시 태도를 노정한 것으로, 본건 고발에 따른 수사 및 처벌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긴급 고발한 이유

(1) 피고발인들은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여 일말의 개전의 정을 나타

내기는커녕, 경호라는 미명하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는바, 이는 내란의 계속으로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 금일 08시경부터 고발장 제출 시점은 13:30경까지 피고발인들의 지시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권, 직권남용 행위는 장시간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점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이 시급히 관련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3) 이에 조국혁신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당론을 모아 윤석열 내란 수괴 일당의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 실천적 행동의 일환으로 본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 7. 참고사항

(1) 본건 고발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영장 집행 수사기관에서 채증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주요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보도한 바도 있어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피고발인들간의 사전 공모 정황 등 수사에 유의미한 자료가 더 확보될 경우 적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또한 본건 고발장 기재로 고발인 진술을 갈음하고자 하는바, 당 관계

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차규근 의원실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 외 본건 고발 관련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중앙당 전략국 (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3.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김준형



국회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이해민



국회의원 정춘생



국회의원 차규근



국가수사본부장 귀중